

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보건소(건강증진과)

제정 2005· 1· 11 규칙 제296호
개정 2010· 8· 13 규칙 제427호
일부개정 2018· 5· 4 규칙 제625호
일부개정 2022· 11· 11 규칙 제738호
일부개정 2023· 12· 22 규칙 제76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신청 등)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·면·동장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· 12· 22>

②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· 12· 22>

1. 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
2.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(「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)
3. 조기 출산 후 전출·입 관련 증빙서류(부동산 계약서, 조기 출산 관련 진단서 등으로 「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)

[전문개정 2022· 11· 11]

제3조(지급절차) ①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, 관내거주기간, 신생아 생년월일,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·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· 11· 11>

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, 지급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, 인터넷, 팩스 등을 이용

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·8·13, 2022·11·11>

제4조(대장 등)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고에 관한 사항) ① 읍·면·동장은 분기별 자녀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·11·11>

② 보건소장은 분기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·8·13 규칙 제42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5·4 규칙 제62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11·11 규칙 제738호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12·22 규칙 제76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22·11·11>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2. 11. 11>

출생신고 및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

(/4분기)

(단위 : 명)

구분	출생신고						출산축하금 신청	비고
	계	지급대상		미지급대상				
		소계	읍·면·동	소계	6개월미만 거주	기타		
분기계								
누계								